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스닥벤처기업&공모주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의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5 월 07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(생략) 1.~3. (생략) 4.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 이하로 한다.	(현행과 동일) 1.~3. (현행과 동일) 4.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% 이하로 한다.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

		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5 월 07 일 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의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

<table>
<tr><td></td><td>권리를 포함한다)<table><tr><th colspan="2"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⑤</td><td>주식 관련 장내 파생 상품</td><td colspan="2">-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
-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이하로 한다.</td></tr></table></td><td>권리를 포함한다)<table><tr><th colspan="2"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⑤</td><td>주식 관련 장내 파생 상품</td><td colspan="2">-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
-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%이하로 한다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